

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-110호

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2일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

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상·음성 원격회의(전화회의 등)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내 비대면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원격회의 제도의 도입(안 제40조의5)

- 1)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에서 음성 또는 음성과 동영상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회의방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
- 2) 이에 원격회의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의견제출

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mcc.go.kr>) 「정책/정보센터 - 법령정보 - 입법예고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중앙동) 정부과천청사
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
- 전자우편 : jihoon9509@korea.kr
- 팩스 : 02-2110-014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(전화 02-2110-1625, 팩스 02-2110-01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